

부산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 회칙(개정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부산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창의적인 진리탐구와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우들의 진리와 학문 탐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부산디지털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부산디지털대학교에 재학중이며 학생회비를 완납한자로 한다.
2. 재학생이 휴학 및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3. 재학생이면서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학우는 준회원이며 각종 자치활동 및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발의 및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고 경품 및 경품권 지급은 불가하다.
 - 단, 준회원이 당첨된 경우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관리)

1.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지니며 각 기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2. 제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본회와 회원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할 권리를 지닌다.

제6조(회원의 의무)

1. 대학 자치와 본회 및 회원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2.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3. 본회의 총학생회 회비는 년 5만원으로 하며, 후반기 신·편입 회원은 2만5천원으로 한다.

제7조(회의기구)

본회는 합리적, 민주적, 자율적인 대학자치의 실현을 위한 기구로 학생총회, 총학생회, 상임위원회, 학과 학생회로 구성한다.

제2장 학생총회

제8조(구성 및 지위)

학생총회는 전체 재학생으로 구성되고,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9조(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1.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
2.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
3. 총학생회장의 탄핵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에 대한 건의

제10조(의장)

학생총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 단, 결위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소집)

1.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 회원 1/10 이상의 요구, 상임위의 재적인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의장이 소집한다.
 - 단, 학생 상임위는 총학생회장, 부회장, 총학생회 임원, 각 학과대표 및 각 전공대표로 구성한다.
2. 회의 소집은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결)

1. 학생총회는 각 학과대표의 2/3 이상의 참여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E-mail 및 온라인상의 참여는 학생총회 개최시간 1일 전까지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총학생회 회장 탄핵은 회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E-mail 및 온라인상의 참여는 학생총회 개회시간 1일 전까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3장 총학생회 조직

제13조(임원 및 역할)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① 총학생회장 1명
- ② 총학생부회장 1명
- ③ 감사 1명
- ④ 사무국장 1명
- ⑤ 기획국장 1명
- ⑥ 재무국장 1명
- ⑦ 홍보국장 1명
- ⑧ 문화국장 1명

2.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총괄 대표하며, 총학생회 회의를 주관하고 제13조 1항의 임원을 선임하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학생총회를 월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 ③ 본회 회원의 중의를 대표하며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거고적인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 ⑤ 임원이 회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담당 업무를 직무유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총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정지 또는 해임할 수 있다.
- ⑥ 그 밖의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중요행사를 집행한다.
- ⑦ 부회장은 본회의 전반에 관하여 총학생회장을 보좌한다.
- ⑧ 감사는 총학생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상임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 ⑨ 각 국의 업무는 제29조와 같다.

제13조의 1항(인수인계)

차기 총학생회장 당선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총학생회 업무 인수인계를 통보한다.

1. 임기만료일 7일전까지 업무전반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임기만료일 이후에 차기 총학생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당선공고 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인계를 완료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의 2항(임원의 자격조건)

1. 신설전공 임원에 대하여는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2.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자는 임명할 수 없다.
3. 학교 명예 및 학생의 품위를 손상한 자는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 대외적 학교 비방 등)
4.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총학생회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13조의 3항(인수인계)

1. 차기 총학생회장 당선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총학생회 업무 인수인계를 통보한다.
2. 임기만료일 7일전까지 업무전반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임기만료일 이후에 차기 총학생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당선공고 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인계를 완료 하여야 한다.

제4장 상임위원회

제14조(지위)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칭한다)는 본회의 의결 기구이다.

제15조(구성)

학생 상임위는 총학생회장, 부회장, 총학생회 임원, 각 학과대표로 구성한다.

제16조(의장)

의장은 총학생회회장으로 한다.

-단, 상임위 의장이 궐위 시 투표를 거쳐 상임위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제17조(업무 및 권한)

상임위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학생회의 전체 예산의 심의, 의결
2.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
3. 학생회칙에 의한 각종 시행세칙 의결

4. 특별기구의 설치 요구안 의결
5. 총학생회의 집행기구 증감에 따른 설치, 운영 의결
6. 학생총회에서 토의 반영된 중요사항을 심의 처리
7. 본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사항 의결
8. 총학생회장의 탄핵 발의 및 특별기구장 탄핵소추에 관한 의결
9. 전국적인 사이버대학 총학생회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
10. 기타 총학생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 의결

제18조(소집)

상임위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정기총회로 구분하고 웹상 또는 의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상임위에서 그 시기 및 장소를 정한다.
2. 임시회의는 긴급을 요할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의장이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원칙으로 하되, 당해 상임위에서 그 시기 및 장소를 정한다.

제19조(의결)

상임위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의 2항(탄핵 소추 및 해임 의결)

1. 상임위는 총학생회장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 ① 회칙을 위반하였거나 업무수행 상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② 학생회비를 부정 사용하였을 경우
 - ③ 사회적 문란 행위로 인해 학교 및 총학생회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을 경우
 - ④ 학생회를 정치적, 종교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 ⑤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2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탄핵 발의는 상임위원의 2/3 이상의 연서로 하고, 재적 상임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한다.
3. 특별 기구장이 1항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재적 상임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제5장 학과 학생회

제20조(조직)

각 학과에 학과 학생회를 둔다

제21조(구성)

각 학과 학생회는 학과별 운영위원과 학과의 학생전체로 구성한다.

제22조(학과별 학과대표 선출)

1. 각 학과의 학과대표를 선출한다.
2. 각 학과의 학과대표는 해당 학과에서 선출하며, 상임위의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제23조(학과별 학과대표의 업무 및 권한)

1. 각 학과대표는 각 학과의 학생활동 내용을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2. 각 학과대표는 학과를 대표하며, 학과대표는 상임위의 위원이 된다.
3. 각 학과에서 추천한 임원 및 이하 기구임원이 회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담당업무를 직무 유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학과대표가 그 직무를 정지 또는 해임할 수 있다.
4. 각 학과대표는 각 학과 의결기구인 학과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5. 기타 사항은 학과 특성에 따라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24조(학과 학생회)

각 학과 학생회는 학과의 재학생으로 구성하며, 학과대표는 학과 운영위원 0명을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6장 총학생회장

제25조(지위)

1.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학생회장은 본회 집행위원회의 각 국을 관리하고 특별 기구를 관할하며, 기타 대내, 외적인 학생 활동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총학생회장은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4. 총학생회장은 부회장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제26조(업무 및 권한)

1. 총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2. 각 국장과 특별 기구장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3. 학생총회, 상임위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
4. 총학생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한다.
5. 총학생회와 학생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해결할 특별 기구를 상임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6. 총학생회장은 다음의 안건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7. 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학생과 관련된 중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회의 학생총회, 상임위가 학교 당국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27조(총학생회장 신분보장)

총학생회장은 상임위의 탄핵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7장 집행위원회

제28조(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지위)

1. 본회의 최고실무 집행 기구로서 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 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되며, 부회장,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3. 각 국장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집행부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총학생회장의 승인 및 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총학생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집행기구로서 사무국, 기획국, 재무국, 홍보국, 문화국을 두며, 필요에 따라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와 부서를 둘 수 있다.
5. 집행 위원회의 각 국장은 각 학과대표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나 면접 후 최종적으로 총 학생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한다.

제29조(각 국장의 업무 및 권한)

1. 사무국장은 총학생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총괄 확인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2. 기획국장은 당해연도 총학생회의 연간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세부기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진행 및 결과에 대한 업무 및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대, 내외 행사의 계획 및 기획 수립업무를 관장한다.
3. 재무국장은 학생회비 수납, 수입, 지출과 결산 등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4. 홍보국장은 총학생회에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게시판 및 온라인 카페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리는 업무, 온라인 학습에 관한 사항 등 대내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5. 문화국장은 동아리를 총괄하며, 동아리 관련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여 문화 활동을 한다

제30조(집행위원회 업무 및 권한)

1. 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집행한다
2. 사업계획, 예산안을 수립하여 상임위에 제출한다.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웹상에 공개한다.
4. 각종 행사와 학생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한다.
5. 총학생회 산하 각 학과 학생회와 동아리, 동아리연합회 기구의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동아리, 동아리연합회)

1. 각 학과 동아리는 학과에 속하며 학과대표의 권한 하에 둔다.
2. 동아리연합회는 총학생회에 속하며 총학생회장 권한 하에 둔다.

제8장 사업 및 재정

제32조(사업계획)

총학생회는 상임위의 심의를 거친 1년 사업계획서를 (예산안제외)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재정 관리)

1.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학교 지원금, 찬조금, 사업별 회비, 총학생회 홈페이지 광고수입, 기타 수입으로 운영하며 본회의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본회의 재정은 학기별로 배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유발생시 마다 집행하고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조정 결정할 수 있다.
3. 본회의 학생회비는 상임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소정의 기간에 납부하며 이를 총학생회장이 집행 및 관리한다. 단, 학생회비 자금관리자는 시행세칙에 명기된 서류를 제출한다.
4. 대학발전을 위한 특별기념 사업비 등은 별도 고지하며, 상임위에서 협의 결정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편성 및 심의)

본회의 예산은 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하며,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하고 웹상에 공개한다.

제36조(지출)

상임위에서 승인된 예산은 본회의 해당기구가 필요로 할 경우 총학생회장이 지출한다. - 단,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총학생회장이 지출할 수 있다.

제37조(준예산과 개정예산)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본예산이 통과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총학생회장은 2개월간의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단, 상임위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총학생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통과된 예산이 가감되어야 할 경우 개정예산을 편성하여 상임위의 수정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예비비)

예비비의 지출은 결산서로 상임위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예산의 집행)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통장이체시 예외) 하여야 하고, 각 기구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온라인 월별회계정리 가능) 경비일체를 월별로 기재 하여야 한다.

제40조(감사의 회계감사)

선임된 재무, 감사는 총학생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결산 시 상임위에 보고한다.

제40조의2(결산보고)

재무, 감사는 결산보고를 1년에 2회로 하며 상임위에 보고 한 뒤 승인을 받은 후 회계연도 익월 말까지 총학생회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

제9장 선거

제41조(선거 시기)

1. 총학생회장 선거 시기는 11월 말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날짜(기말고사)에 준해서 변경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 시기를 30일 뒤로 연기할 수 있다.
2. 선거공고결과와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투표일 35일전으로 하고, 입후보자 등록마감은 입후보자 등록 시작일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3. 입후보자 심사는 입후보자등록 마감 3일간으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입후보자 확정 공고는 투표일 25일전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학교홈페이지 및 총학생회 카페에 공고한다.

제41조의2(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의 회원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42조(입후보자)

1.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3. 총학생회장은 본회 회원으로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편입은 2학기이상)
4.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처벌 및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당해연도 회비완납자.
6. 직전학기 성적이 3.00이상인자.
7. 본교 재학생 30명의 추천을 받은자.(자필 또는 온라인 서명을 겸하여 받는다. 단 양식은 자유)
8.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43조(입후보자 등록)

총학생회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성적증명서 1부
3. 학생 추천인 서명부 30명(소정양식)
4. 후보자공약 및 소견서(소정양식)
5. 후보자 정보자료 공개동의서(소정양식)
6. 후보자 서약서(소정양식)

7. 소속 학부장 추천서 1부(소정양식)

제4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위 임무)

1. 선거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치르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 를 둔다.
2. 선관위 구성은 투표일 35일 전으로 한다.
3. 선관위는 각 학과별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선출한다.
4. 각 학과의 선관위 위원은 각 학과에 위임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5. 선관위는 시행세칙에 위배되는 각종 사안을 심의 의결하며, 입후보에 대한 제재의 조치를 가할 수 있다.
6. 투표일 이후 선관위 위원은 차기 선거에 출마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선관위 위원이 출마 및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때는 선거시행일 30일 이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하며, 사퇴서를 선관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최소한 자신의 학과 학생회 회원들에게 웹상에 공개해야 한다.
7. 선거공고는 투표일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8. 총학생회 임원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경우 투표일 15일 전에 총학생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를 학교홈페이지 총학게시판 및 다음카페에 공개에 공개하여야 한다.
9. 선관위는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총학생회 회비에서 지출한다.
10. 선거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45조(선관위원 자격)

1. 본회 회원으로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2. 회비 완납자(전년도와 당해연도)에 한한다. 단, 미납자의 경우 완납 후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45조의 2(선관위원장의 선출권 권한)

1.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2. 선관위 위원장의 궐위 시 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한다.

제46조(선거방법 및 당선 결정)

1. 본회의 선거는 직접 선거로 한다.
2. 본회의 선거는 본교 홈페이지(인터넷)에서 실시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3. 당선은 본회 회원의 참여로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4.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신임투표(찬반투표)로 투표에 참여한 회원의 과반 수 이상 득표 시 당선된다.
5.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재선거하기로 결정한다.

제47조(재선거)

1.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재선거는 1회에 한한다.
2. 선거가 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3.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 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을 때
4. 신임투표(찬반투표) 결과 과반 수 이상 득표가 안 될 경우

제48조(승계 및 보궐선거)

1. 회장의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대행 체재로 잔여임기를 대신한다.
2.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불신임 의결될 경우 부회장이 그 직무를 승계한다.
3. 총학생회장, 부회장 모두 궐위되거나 불신임 의결된 경우에 한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4. 보궐선거는 본회의 선거 절차에 준한다.

제48조의 2(당선공고)

1. 선관위 위원장은 차기 총학생회장의 당선이 확정된 경우 차기 총학생회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고 이를 총학생회 게시판에 24시간 이내에 게시, 공포하여야 하며 당선자에게는 당선결과 즉시 통지를 한다.
2. 투표시간은 투표시작 당일(11월 마지막주 수요일) 18:00시부터 익일 18:00(24시간)까지 투표결과까지이며, 선관위원은 투표결과를 투표종료를 앞둔 17:30~18:00까지 참관 후 발표한다.

제48조의 3(이의신청)

1. 선거 또는 당선 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을 총학생회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의 4(당선무효)

1.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로 결정한다.

2.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자
3. 입후보자가 위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4. 고의로 부정선거 운동을 한 자
5. 선관위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
6.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표로 한다.
8. 이름, 학번, 전공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제49조(선거관리)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장 회칙 개정

제50조(발의)

1.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
2. 회장발의
3. 상임위의 2/3 이상 또는 본회 회원의 1/10 이상 발의
4.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회장이 즉시 발의 안을 공고하고 개정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51조(개정절차)

1. 회칙개정은 아래의 개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칙 개정안 발의
3. 상임위의 최종심의 및 의결 .
4. 회칙개정 공포(회장)
5. 개정 의결된 회칙은 회장이 즉시 공포 한다.

제52조(의결공포)

1. 회칙개정 발의 시 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 30일 이내에 상임위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개정된 회칙은 회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53조(효력)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단, 회칙의 개정 내용에 따른 발효시한에 대한 특별 부칙을 둘 수 있다.

제2조(경과조항)

이 회칙 시행당시 본회의 모든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한다.

제3조(준용)

기타 상충되는 시안은 본회 회칙재정 전문의 뜻에 따라 해석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정 2005년 12월 05일

1차 개정 2008년 01월 16일
2차 개정 2009년 02월 16일
3차 개정 2012년 05월 15일
4차 개정 2014년 09월 19일
5차 개정 2015년 11월 24일
6차 개정 2016년 10월 07일
7차 개정 2017년 08월 24일
8차 개정 2017년 10월 28일
9차 개정 2018년 11월 26일
10차 개정 2019년 11월 19일
11차 개정 2022년 03월 03일
12차 개정 2023년 03월 03일
13차 개정 2025년 10월 30일